

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



성 북 구
(환 경 과)

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

의안 번호	4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6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12조 및 제78조에 의거 우리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「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」에 대하여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수립근거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12조(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 등)

- 국가와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북구도 중장기(‘25년~’ 34년)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함.

나. 사업목표

- 탄소중립·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, 서울특별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역의 기후변화 여건 및 환경요인 등 지역적 특성 분석
- 성북구 온실가스 배출·흡수 현황 및 전망

- 성북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·연도별 이행대책
· 중장기 감축목표: ' 30년까지 '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% 감축
-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·연도별 이행대책 수립
※ 기본계획 시간적 범위 : 2025년~2034년, 공간적 범위 : 성북구 전역
※ 기준연도: 2018년/ 중장기 감축목표 연도: 2030년/ 탄소중립 목표연도/ 2050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
[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]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관련 규정

[붙임]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제12조(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가기본계획, 시·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·군·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·군·구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도지사”는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본다. <개정 2024. 10. 22.>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·군·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는 시·군·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,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8조(국회 보고 등)

-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·도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

제10조(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)

- ①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배출·흡수현황 및 전망
 2.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·연도별 이행 대책
 3. 기후변화의 감시·예측·영향·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
 4.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 5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 6. 그밖에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, 제출·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